

# 하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924
----------	------

발의연월일 : 2024년 7월 12일

발의자 : 정혜영 의원

## 1.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하남시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하남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작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안 제6조)
- 하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위원회 설치(안 제7조)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실무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3. 참고사항

- 제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기타사항 : 덧붙임
-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24. 7. 12. ~ 7. 17.

○ 의견 내용 : 입법예고 중

바. 부서의견(환경정책과) : 기한 내 회신없음

## 하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하남시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하남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사업 등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감축효과 등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4. “온실가스감축영향평가”란 재정사업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사업 결정 등에 활용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탄소중립 이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지표, 대상사업 등의 선정, 예산의 수립·집행·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 ①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지침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침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하여 작성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7조에 따른 하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의 작성) ①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각 부서의 장은 예산 담당 부서의 장이 온실가스 감축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 사업의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결산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제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매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영향평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하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

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

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하남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실무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7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예산 및 환경분야 각 1인 이상의 전담공무원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실무반(이하 “실무반”이라 한다)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실무반은 작성 중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유형분류, 온실가스 감축효과, 성과지표 등의 적정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과정 운영) 시장은 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온실가스 감축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민참여 및 지원) ①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용에 따른 위원회 운영, 지침서, 예산서, 결산서 등을 온라인 등을 활용한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등) 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2024. 06. 20. 현재)

연 번	자치단체명	법 규 명	제 · 개정 일	소관부서	비고
1	경기도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2023-07-18	기후환경에너지국 기후환경정책과	
2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	2023-11-10	기획조정실 탄소중립과	
3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2024-02-19	환경보건국 기후에너지과	
4	경기도 양평군	양평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2023-03-20	경제산업국 환경과	
5	경기도 오산시	오산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	2024-03-25	환경사업소 환경과	
6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2024-04-01	기획경제국 기획전략과	
7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2023-06-23	경제환경국 에너지산업과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2022-11-10	교통환경국 기후환경과	
9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2023-12-07	환경과	
10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완주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2024-05-23	경제산업국 자원순환과	